

제15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제15.1조
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의 대표와 영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무역위원회¹를 설치한다.

2. 무역위원회는 런던과 서울에서 교대로 1년에 한 번 또는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무역위원회는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영국의 국제통상부장관, 또는 그들 각각의 지명자들이 공동의장이 된다. 무역위원회는 회합 일정에 대해 합의하고 그 의제를 정한다.

3. 무역위원회는
 - 가. 이 협정이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 나. 이 협정의 이행과 적용을 감독하고 촉진하며 협정의 일반 목표를 증진한다.
 - 다.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위원회, 작업반 및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감독한다.
 - 라. 양 당사국 간의 무역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 마. 제14장(분쟁해결) 및 부속서 14-가(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에서 부여된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인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거나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안과 방법을 구한다.
 - 바. 양 당사국 간 무역의 발전을 연구한다. 그리고
 - 사.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 관련된 그 밖의 관심 사안을 검토한다.

4. 무역위원회는
 - 가. 전문위원회, 작업반 또는 다른 기관을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하기로 결

¹ 문화협력의정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무역위원회는 그 의정서에 관하여 어떠한 관할권도 가지지 아니하고 문화협력위원회는 문화협력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기능이 관련될 경우에 그 의정서에 관하여 무역위원회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정할 수 있다.

- 나.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 조직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와 의사교환을 할 수 있다.
- 다.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이 협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 협정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라.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할 수 있다.
- 마. 이 협정이 상정한 대로 권고를 하거나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 바. 자신의 의사진행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 사.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14장(분쟁해결) 및 부속서 14-가(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에서 부여된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라도 무역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6. 당사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무역위원회, 전문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때에는,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7. 투명성과 개방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광범위한 시각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중구성원의 견해를 고려하는 각국의 관행을 확인한다.

제15.2조

전문위원회

1. 다음의 전문위원회가 무역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 가. 제2.16조(상품무역 위원회)에 따른 상품무역 위원회
- 나. 제5.10조(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에 따른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 다. 제6.16조(관세위원회)에 따른 관세위원회
- 라. 제7.3조(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에 따른 서비스 무역·설

립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

마. 제13.12조(제도적 장치)에 따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그리고

바. ‘원산지 상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 부속서 4에
따른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된 전문위원회의 활동범위와 임무는 이 협정의 관련되는 장과 의정서에서 정의된다.

2. 무역위원회는 자신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문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기능을 결정한다.

3.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위원회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적절한 급에서 런던과 서울에서 교대로, 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이나 무역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하고, 대한민국과 영국의 대표가 공동의장이 된다. 전문위원회는 회합 일정에 대해 합의하고 의제를 정한다.

4. 전문위원회는 자신의 회합에 충분히 앞서, 자신의 일정 및 의제를 무역위원회에 알린다. 전문위원회는 무역위원회의 각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을 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전문위원회의 창설 또는 존재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어떠한 사안을 무역위원회에 직접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무역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할당된 임무를 변경 또는 수행하기로 결정하거나 전문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15.3조

작업반

1. 다음의 작업반이 무역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가. 부속서 2-다(자동차 및 부품) 제9조(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제2항에 따른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나. 부속서 2-라(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5조(규제 협력)제3항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 다. 부속서 2-마(화학물질)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작업반
- 라. 제3.16조(무역구제 협력 작업반) 제1항에 따른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
- 마. 제7.21조(상호인정) 제6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 작업반
- 바. 제9.3조(정부조달 작업반)에 따른 정부조달 작업반, 그리고
- 사. 제10.24조(지리적 표시 작업반)에 따른 지리적 표시 작업반

2. 무역위원회는 특별 임무 또는 대상을 위한 다른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작업반의 구성, 임무 및 기능을 결정한다. 그 작업이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을 다루는 양 당사국 간 모든 정기 또는 임시 회합은 이 조의 의미에서 작업반으로 간주된다.

3.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작업반은 상황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이나 무역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한 급에서 회합한다. 작업반은 대한민국과 영국의 대표가 공동의장이 된다. 작업반은 회합 일정에 대해 합의하고 의제를 정한다.

4. 작업반은 자신의 회합에 충분히 앞서, 자신의 일정 및 의제를 무역위원회에 알린다. 작업반은 무역위원회의 각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을 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작업반의 창설 또는 존재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어떠한 사안을 무역위원회에 직접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무역위원회는 작업반에 할당된 임무를 변경 또는 수행하기로 결정하거나 작업반을 해산할 수 있다.

제15.4조

의사결정

1. 무역위원회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경우 모든 사안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다.

2. 취해진 결정은 양 당사국을 구속하고, 양 당사국은 취해진 결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

한 조치를 한다. 무역위원회는 또한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3. 무역위원회는 양 당사국 간의 합의로 결정과 권고를 작성한다.

제15.5조

개정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역위원회는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및 주석의 개정을 결정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그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15.5조의2

후속 협상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기존 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추가적인 자유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협상을 개시한다.

2. 한쪽 당사국은 협상의 범위에 포함될 주제에 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3.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4년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제15.6조

접촉선

1.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시에 조정자를 지정한다. 조정자의 지정은 이 협정의 특정 장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의 특정한 지정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조정자는 이 협정의 이행과 관계된 사안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을 적시하고 요청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원을 제공한다.
3. 자국의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대해 자국의 조정자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에 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질의에 신속히 답변한다.

제15.7조

과세

1. 이 협정은 과세조치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이,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조세 협약상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조세 협약의 경우, 그 협약상의 권한 있는 당국들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데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양 당사국이 각국의 재정법령 관련 조항의 적용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는 납세자를, 특히 납세자의 거주지와 납세자의 자본이 투자된 장소에 대하여, 구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 그 밖의 조세 약정 또는 국내 재정법령의 과세 조항에 따라 조세의 방지 또는 회피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의 채택이나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5.8조
국제수지 예외

1.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의 어려움 또는 그러한 위협에 처한 경우 그 당사국은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및 설립에 대한 제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제한 조치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조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어떠한 제한 조치라도 비차별적이고 그 기간이 제한되며,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 상황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이상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수립된 조건을 따르고 적용 가능한 대로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된다.

3. 제한 조치 또는 이에 대한 변경을 유지하거나 채택한 당사국은 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그 제거를 위한 시간계획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한다.

4. 제한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서 협의가 신속히 개최된다. 그러한 협의는 관련 당사국의 국제수지 상황과 이 조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제한을 특히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가.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의 어려움의 성격과 범위

나. 대외 경제 및 교역 환경, 또는

다.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시정 조치

협이는 제한 조치가 제3항 및 제4항을 준수하는지를 다룬다. 외환, 통화 보유고 및 국제수지와 관련되는 국제통화기금(이하 “국제통화기금”이라 한다)이 제출한 통계 및 그 밖의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는 수용되어야 하고, 결론은 관련 당사국의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 상황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평가에 근거한다.

제15.9조

안보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 나.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 1)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생산이나 거래와 관계되거나 군사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조치
 - 2)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또는
 - 3) 전시 또는 국제 관계에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해지는 조치, 또는
- 다. 당사국이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의 목적을 위한 자국의 국제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치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제15.10조

발효

1. 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영국에 적용되는 것이 중단된 때에 발효한다. 다만, 양 당사국은 그 날까지 각국의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가. 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영국이 그들 각각의 관련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의 다음달 첫째일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나.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보로 잠정 적용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통보의 다음달 첫째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 이 협정이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이 협정의 발효”라는 용어는 잠정 적용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15.11조

존속기간

1.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있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폐기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3. 폐기는 제2항에 따른 통보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5.12조

의무이행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상의 각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반 또는 특정 조치를 한다.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은 국제법의 일반 규칙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하는 이 협정의 폐기의 경우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13조

부속서·부록·의정서 및 주석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및 주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5.14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이전 협정은 이 협정에 의해 대체되거나 종료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양 당사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의무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15.15조 영역적 적용

1.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가. 영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영국에 적용되는 것이 중단되기 직전에 그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된 범위와 조건하에 영국의 영역과 영국이 그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영역²

나.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영역

2. ‘영역’에 대한 언급은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에 따라 양해된다.

제15.16조 정본

이 협정은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²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사이프러스의 아크로티리와 데켈리아의 주권기지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년 ()월 ()일 런던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영국을 대표하여